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5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2월 26일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특별휴가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를 신설하지 않음(안 제24조제14항 삭제).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제14항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 24 조 (특별휴가) <u><신 설></u>	제 24 조 (특별휴가) ⑭ <u>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 여 년 1일의 휴가를 받 을 수 있다. 이 경우에 생일 또는 기념일이 속 하는 해당 월 중 사용할 수 있다.</u>	제 24 조 (특별휴가) <u><삭 제></u>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지방”을 삭제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)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
2. 근무시간의 조정
3.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
4. 그 밖에 필요한 조치

제2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⑬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1일의 출산지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<u>지방공무원</u> 복무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<u>지방공무원</u>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복무선서) ① 서울특별시 <u>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</u>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서울특별시 <u>공무원</u> 복무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<u>공무원</u>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복무선서) ① 서울특별시 <u>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</u>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.</p> <p><u>제20조의2(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)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</u> <u>2. 근무시간의 조정</u> <u>3.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</u>

제24조(특별휴가)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

② ~ ⑫ (생략)

<신 설>

4. 그 밖에 필요한 조치

제24조(특별휴가)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

② ~ ⑫ (현행과 같음)

⑬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1일의 출산지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.